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. 3. 22 선고 2015가단816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3. 8.

판결 선고 2016. 3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454m²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울타리 및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이새롬

별지